

서울 창업성장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542
------	-----

2023. 3. 2.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2월 6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3년 2월 9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23. 3. 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태균 경제정책실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융·복합 기술, 정보통신(ICT),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2.9월부터 「서울창업성장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나.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023.3.31. 만료됨에 따라, 역량 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유망 신성장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기술 사업화 및 연구개발(R&D), 글로벌 판로개척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개요

시 설 명	서울창업성장센터
소 재 지	서울 성북구 화랑로 14길5(한국과학기술연구원 내)
시설규모	연면적 1,251㎡
시설용도	창업지원시설(입주공간 20개실, 네트워킹 공간 등)

나. 사업개요

- 위탁사무 :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 위탁기간 : 1년 8개월 ('23. 5. ~ '24.12.)
- 위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
-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585백만원 ('23. 5. ~ '23.12.)

다.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 추진경위

- 2012. 7. : 제238회 정례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2014. 6. : 제253회 정례회 재계약 보고
- 2017.11. : 제277회 정례회 재계약 보고
- 2020. 9. : 제297회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2022.11. : 민간위탁 재위탁 방침 수립
- 2023. 1.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적정)

○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필요성

- 서울창업성장센터는 융·복합 기술, 정보통신,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발굴·육성, 기술교류 및 사업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첨단 산업 분야 기업 지원의 거점 역할을 수행해 왔음
- 특히 첨단산업 분야 기업 육성 사무는 민간의 전문성과 능률성은 물론, 유관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다양한 창업주체와의 협력으로 급변하는 창업 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이 필요한 사무임
- 이에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서울형 창업생태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창업지원 분야의 전문성 및 노하우를 갖춘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라.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서울창업성장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 입주기업 심사·선발 등 창업기업 보육지원
- 운영 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 기술교류 및 사업화 프로그램 운영

- 기술창업 컨설팅, 기술이전 후속 R&D 프로그램 등 운영

○ 글로벌 진출 지원 및 마케팅 프로그램 운영

- 벤처투자자(VC), 액셀러레이터(ACC) 등을 통한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
- 글로벌 진출 및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서울창업성장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
 - 경비 및 시설 유지보수 총괄 등(안전점검, 보안관리 등)
 -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을 위한 설비 구매 및 시설정비
- 기타 위·수탁사무와 관련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한 사항

마.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23.1.17.) 심의결과 : 적정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동의안의 개요

- 동의안은 서울창업성장센터의 위탁기간 만료(2023.3.31.)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해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나. 서울창업성장센터 현황

- 서울시는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KIST”)에 ‘서울창업성장센터(이하 “성장센터”)’를 조성해 2012년 9월부터 한국기술벤처재단(이하 “벤처재단”)²⁾에 위탁·운영하고 있음.
- 성장센터는 창업 7년 미만의 첨단산업 분야³⁾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공간(20개사)을 제공(1+1년, 임대료 무상)하고, 기술이전 및 후속 R&D 과제 지원, 글로벌 마케팅, 스케일업(Scale-up)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음.

1)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2) KIST가 100% 출연한 비영리재단법인

3) 모집분야는 ICT(정보통신), BT(바이오), ET(환경에너지), NT(나노Tech.), 융·복합기술, 소재·부품임

<서울 창업성장센터 현황>



- 위 치 : 성북구 화랑로 14길 5 KIST
- 규 모 : H1동 1,166㎡(입주공간 20개)
- 지원대상 : 융복합기술 정보통신(ICT), 바이오 등
- 사업내용 : IT, BT 분야 기술 사업화 등
- '22년예산 : 1,189백만원
- 수탁기관 : 한국기술벤처재단
- 위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
- 위탁기간 : 2021.1.1. ~ 2023.3.31.(2년3개월)
- 운영인력 : 6명(센터장1, 전담인력 5)

- 지난 11년간(2012~2022) 성장센터 입주기업의 성과를 살펴보면, 총매출 1,090억원, 투자유치 504억원, 신규고용 462명을 창출하였으며, 성장센터 입주기업 5년차 생존율은 80%⁴⁾에 달해 국내기업 29.2%⁵⁾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임(2020년 기준).

<서울 창업성장센터 입주기업 성과>

(국내 실적)

구 분	기업 수	총매출	투자유치	신규고용	시제품제작	특허출원, 등록
총 계	160개사	1,090억원	504억원	462명	505건	509건
2022년	20개사	90억원	121억원	63명	83건	86건
2021년	20개사	75억원	84억원	83명	78건	67건
2020년	20개사	110억원	74억원	62명	76건	111건
2019년	20개사	132억원	67억원	52명	55건	77건
2018년	20개사	90억원	34억원	87명	45건	62건
2017년	10개사	156억원	15억원	35명	26건	16건
2016년	10개사	140억원	17억원	19명	25건	16건
2015년	10개사	91억원	19억원	16명	26건	19건
2014년	10개사	82억원	32억원	24명	33건	20건
2013년	10개사	76억원	28억원	4명	31건	17건
2012년	10개사	48억원	13억원	17명	27건	18건

4) 2015년 당시 지원기업의 2020년 생존율을 의미하며, 지난 11년간(2012~2022) 기준 평균 생존율은 89%임

5)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국내외 재창업 지원정책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 2021.

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 서울시는 ICT(정보통신), BT(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성장센터를 벤처재단에 계속 위탁해 옴.
- KIST가 출자해 설립한 벤처재단은 성장센터의 첨단기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필수적인 전문인력과 연구장비 등 KIST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제공하여 왔음.

<서울 창업성장센터 민간위탁 추진경과>

- 대학주도 차세대 첨단산업 거점조성 기본계획(경제정책과-113602, '11. 12.)
 - 제238회 정례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12. 7.)
 - 시-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업무협약 체결('12. 7.)
 - 1차 시-한국기술벤처재단 위·수탁 협약('12.9.~'14.12., 신규·사무형)
 - 2차 시-한국기술벤처재단 위·수탁 협약('15.1.~'17.12., 재계약·사무형)
 - 3차 시-한국기술벤처재단 위·수탁 협약('18.1.~'20.12., 재계약·사무형)
 - 서울창업성장센터 임차 추진 계획(투자창업과-5348, '19. 5.)
 - 제297회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20. 9.)
 - 4차 시-한국기술벤처재단 위·수탁 협약('21.1.~'22.12., 신규·시설형)
-
- 그러나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재계약 심사(2022.7.26.)에서 같은 기관의 10년간 장기수탁 문제가 지적되면서 프로그램의 고도화를 위해 수탁기관을 새롭게 선정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됨에 따라 시의회에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됨.
 - 민간위탁 성과보고서(2022.6.)에 따르면, 수탁기관의 사업운영 전문성과 인력관리, 입주기업의 사업활성화 측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 있으나,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⁶⁾

- 창업 도약 단계에 있는 기업의 선정과 평가, 사업화 지원 등의 위탁사무는 첨단산업 기술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조직, 인력을 갖추고 창업분야의 단계별 보육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창업지원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일 수 있음.
- 다만,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수탁기간(2021. 1.~2022.12.)이 이미 경과되었고, 재위탁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도 계약기간 종료(2023.3.)에 임박해 동의안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예산이 전용⁷⁾되는 문제가 발생한 바, 엄중한 주의가 요구됨.
- 2019년 5월 위탁유형의 변경(사무형→시설형)으로 기존 위탁사무를 종료하고 신규 위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적시에 준수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음.

<재위탁 추진 경과>

- '22. 7.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 심의결과 '조건부 적정'
- '22. 8.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사업 적정성 검토
- '22. 9. 시-재단 입주공간 무상 임대차 협상
- '22.12.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일시연장 위·수탁 협약체결(90일 연장)

6) 2021년 1분기의 예산집행률이 34.5%로 저조한데 비해 4분기의 예산 대비 결산 집행률이 245%로 과다 발생돼 연간 사업과 예산 집행이 분기별로 적절히 인배될 필요가 있음(서울 창업성장센터 운영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2022.6.).

7) 기존 수탁기관과 계약기간을 3개월 연장(2023.1~2023.3.)하고, 1개월(2023.4)을 용역으로 운영할 계획(민간위탁금→사무관리비, 22백만원)

당초 협약기간(2년)	변경 협약기간(2년 3개월)	비고
'21. 1. 1. ~ '22. 12. 31.	'21. 1. 1. ~ '23. 3. 31.	90일 연장

○ '22.12.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창업지원공간 관련 업무협약 체결

- H1동 20개실(1,166㎡) : 2023.1.1.~2024.12.31.
- L2동 20개실(1,251㎡) : 2023.4.1.~2024.12.31.

※H1동 리모델링 공사기간 변동 또는 기타 사정에 따라 L2동 사용기간 변경 가능

○ '23. 1. 제1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 심의결과 '적정'

- 또한 지난 11년간 KIST의 전문인력과 연구장비,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성장센터가 운영된 만큼, 첨단산업 분야의 우수한 민간 창업 기업의 신규 진입과 경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 이밖에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 시 입주공간의 임대차 계약과 시설 이용 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참고자료] 2022년 서울창업성장센터 성과

① 입주기업 지원

(국내 실적)

구 분	기업 수	총매출	투자유치	신규고용	시제품제작	특허출원, 등록
2022년	20개사	90억원	121억원	63명	83건	86건
2021년	20개사	75억원	84억원	83명	78건	67건
2020년	20개사	110억원	74억원	62명	76건	111건

- 입주기업 맞춤형 기업진단 및 IR 피칭 컨설팅 8개사
- 단계별 맞춤형 성장 바우처 제공(20백만원 내외)
- KIST 인적·물적 인프라 활용 및 기술 컨설팅 지원

인적 인프라		물적 인프라		
R&D 과제	기술컨설팅	나노팹센터	특성분석센터	연구장비 활용
4건	47건	4건	8건	122건

<우수사례>

- (주)넥스젤바이오텍 : 차세대 하이드로젤 치료 기술
 - ‘Tech Trade On’을 통해 KIST로부터 24건 특허이전 후 상용화 성공
 - 특허 1건 전용계약실시, 기술료 8억원, 매출액의 6% 기술료 재판매 등 수익창출
- (주)네오켄바이오 : 의료용 대마 기술
 - 시리즈 A 투자유치 45억원, GMP 인증완료로 '23년도 상장 준비중



서울창업성장센터 전경



KIST 특성분석센터

2 기술교류 및 사업화 프로그램 운영

유망기술 확보	기술이전 추진		후속 R&D
	이전 신청	이전 완료	
1,543건	241건	70건	10건

○ 스타트업플러스 플랫폼 내 운영하여 상시 기술매칭 및 이전 시행

○ R&D 인프라 확충을 통한 다양성 및 전문성 확보

- 기술창업스카우터 확대(57명('21)→100명('22))를 통한 기술컨설팅 43개사 70건

▶ (분야) 정보통신·AI 31명, 화학·바이오 25명, 환경·에너지 11명, 재료 28, 기술금융 5명

▶ (구성) 대학교수 54명, 출연연구원 41명, 기술보증기금 5명

☞ 절차 : (기업) 이전 신청 ⇒ (성장센터) 사전검토 · 출연연에 제출 ⇒ (출연연) 이전 검토 ⇒ 이전계약

○ 기술이전 완료 기업중, 심사를 통해 기술상용화를 위한 후속 R&D 지원

- 시제품 제작, 장비활용 및 시험 분석, 기술사업화 컨설팅, 전문가 연계 등

3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

○ 한·중 언택트 테크노마트(기술설명회) 개최를 통한 중국시장 판로개척 지원

- 일시 : '22. 11. 29. ~ '22. 11. 30.

- 입주기업 8개사 IR 자료 영문·중문 번역 및 자료 고도화, 온라인 설명회

▶ 중국 참여기업(29개사) : 화웨이, 텐센트, 알리바바 등

입주기업 참여(8개사) : 에스제이글로벌, 넥스젤바이오텍, 주암, 네오켄바이오 등

- 에스제이글로벌(주) 54억원 규모 기술수출계약 체결, (주)주암 중국법인설립 진행중



한·중 테크노마트 행사 사진

붙임

서울창업성장센터 입주기업 명단('23. 2.)

※ 입주 계약기간 : 2023. 2. 1. ~ 2024. 1. 31.(1년), 신규 9개사 추가

구분	연번	기업명	대표자	분야	사업내용
연장	1	(주)넥스젠바이오텍	송○○	BT(바이오)	차세대 하이드로젤 치료 기술
	2	(주)보인바이오컨버전스	이○○	BT(바이오)	한·양방융합이론 기반 다중표적 신규 천연물 의약품 개발
	3	(주)에버닌	유○○	BT(바이오)	환자의 관절 상태를 분석 후 맞춤형 으로 수술 후 재활 또는 관절 건강을 위한 운동
	4	(주)캔테라피	신○○	BT(바이오)	신규 합성신약을 이용한 항암제 개발
	5	(주)알트메디칼	유○○	BT(바이오)	세계최초 미토파지 기반 알츠하이머 성 치매 치료제 개발로 치매 치료
	6	(주)지와이생명과학	양○○	BT(바이오)	리푸리놀을 함유한 기능성 화장품 크림
	7	에스제이글로벌(주)	신○○	소재·부품	케나프(KENAF, Hibiscus Cannabinus L.)를 이용한 신소재 개발
	8	알리고에이아이(주)	이○○	ICT(정보통신)	사용자 별 최적 상품 자동 노출 B2B 솔루션
	9	(주)스마트엘박스	장○○	융·복합기술	가정용 Large Smart Education(H/W & S/W & 교육 콘텐츠)플랫폼
	10	(주)복용	홍○○	융·복합기술	원터치 슬라이드 접이식 Hybrid e-bike , e-board - 자전거
	11	(주)더서비스플랫폼	김○○	ICT(정보통신)	O2O 텍스 리펀드 서비스
신규	12	(주)아고스비전	박○○	융·복합기술	자율주행로봇 3D 광시야 카메라
	13	(주)디에이치에너지시스템	김○○	융·복합기술	차량용 비상 보조 배터리
	14	주식회사 지아이비타	이○○	ICT(정보통신)	AI건강관리 앱
	15	주식회사 컴플렉시온	박○○	ICT(정보통신)	무빙분석기술을 활용한 운동추천 앱
	16	주식회사 이팜헬스케어	이○○	ICT(정보통신)	약국 처방전 스마트 오더 시스템(플랫폼)
	17	마이오텍사이언스 주식회사	김○○	BT(바이오)	근감소증 치료신약
	18	레디큐어	정○○	BT(바이오)	알츠하이머 방사선치료 의료기기
	19	정메드 주식회사	정○○	BT(바이오)	자궁경부암 치료 및 예방 의료기기
	20	마이오펫 주식회사	심○○	BT(바이오)	반려견 근육강화 치료제 및 식품개발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542
----------	-----

제출년월일 : 2023년 2월 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융·복합 기술, 정보통신(ICT),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2. 9월부터 「서울창업성장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3. 3.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역량 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유망 신성장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기술사업화 및 연구개발(R&D), 글로벌 판로개척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개요

시설명	서울창업성장센터
소재지	서울 성북구 화랑로 14길5(한국과학기술연구원 내)
시설규모	연면적 1,251㎡
시설용도	창업지원시설(입주공간 20개실, 네트워킹 공간 등)

나. 사업개요

- 위탁사무 :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 위탁기간 : 1년 8개월 ('23. 5. ~ '24.12.)
- 위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
-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585백만원 ('23. 5. ~ '23.12.)

다. 민간위탁(재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 추진경위

- 2012. 7. : 제238회 정례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2014. 6. : 제253회 정례회 재계약 보고
- 2017.11. : 제277회 정례회 재계약 보고
- 2020. 9. : 제297회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2022.11. : 민간위탁 재위탁 방침 수립
- 2023. 1.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적정)

○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필요성

- 서울창업성장센터는 융·복합 기술, 정보통신,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발굴·육성, 기술교류 및 사업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첨단 산업 분야 기업 지원의 거점 역할을 수행해 왔음

- 특히 첨단산업 분야 기업 육성 사무는 민간의 전문성과 능률성은 물론, 유관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다양한 창업주체와의 협력으로 급변하는 창업 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이 필요한 사무임
- 이에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서울형 창업생태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창업지원 분야의 전문성 및 노하우를 갖춘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라.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입주기업 모집, 선발, 계약 등 관리 및 운영
 - 입주기업 심사·선발 등 창업기업 보육지원
 - 운영 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 기술교류 및 사업화 프로그램 운영
 - 기술창업 컨설팅, 기술이전 후속 R&D 프로그램 등 운영
- 글로벌 진출 지원 및 마케팅 프로그램 운영
 - 벤처투자자(VC), 액셀러레이터(ACC) 등을 통한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
 - 글로벌 진출 및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서울창업성장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
 - 경비 및 시설 유지보수 총괄 등(안전점검, 보안관리 등)
 -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을 위한 설비 구매 및 시설정비
- 기타 위·수탁사무와 관련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한 사항

마.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23. 1. 17.) 심의 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②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민간위탁금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창업정책과 동북권창업팀 임재선 (☎ 2133-4880)
김고은 (☎ 2133-4883)